##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69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 강득구·강준현·김민석

민병덕・박 정・안호영

양정숙ㆍ어기구ㆍ윤준병

이성만 • 이용빈 • 이원욱

홍성국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미래학교로 변화하기 위해 디지털혁명과 생태환경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해야 할 책무임.

그러나 현재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설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고, 노후 학교시설·IT인프라와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은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교 내 수목의 관리가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관리되고 있음.

또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과 공유할수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여건 구현을 위해 사용자 참여를 통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 중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절차, 심의 등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다양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 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 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또한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 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 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 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감독기관이 수 행하는 "사전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 사회 연계 가능성 및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 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중·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과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있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2.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3. 교육시설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의 사전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 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전기획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사전기획 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사업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 사회 연계 가
	능성 및 발주방식 검토, 교육
	<u>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u>
	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
	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u>것을 말한다.</u>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0.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u>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중
	・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
	한 사항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 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 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 중 ·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 되어야 한다.
-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 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 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과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 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 항
  -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

#### 성 제고방안

-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 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의뢰할 수 있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 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 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 터
- 2.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3. 교육시설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의 사전기 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

<신 설>

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제 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 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수 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15. · 16. (생략)

② (생략)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 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사 전기획 또는 제26조의3제2항 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 정성 검토

16. · 17. (현행 제15호 및 제16 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